

광주지방법원 2020. 11. 12 선고 2020가단12115 판결 [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0. 11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동구 C 임야 683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6㎡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26.44㎡, 시멘트블럭조 스투치지붕 단층 물치 4.62㎡, 외벽담장을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이차웅

별지